

영등포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3. 9. 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240호로 2013년 9월 3일 운동규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우와 지원 외에 영등포구에서 예우와 지원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대상자의 적용범위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신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다. 타 구 제정 현황 : 서울시, 금천구의 3개 자치구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 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이용 및 사용료 감면, 명절시 위문 등 지원사업과 공적 소개 등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사상자의 수는 1970년부터 약 20년간은 총 39명 이었으나 1990년 이후 물놀이 사고 구조 행위 등의 증가로 2013년 6월 기준 67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등록인원은 2012년 기준 124명으로 조사되었고, 우리 구는 현재 3세대 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는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보상금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011년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위로금과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본 제정안이 점점 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사회분위기에서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동을 높이 기리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우리 구에서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 등을 예우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향후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